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732호 2026. 9. 17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하천점용 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6-99호)
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준공 승인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6-100호)

공 고

- 예천 군계획시설(주차장)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6-1210호)
- 예천 군계획시설(유수지)사업 공사완료 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6-1211호)
- 예천군 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6-1215호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 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예 천 군 수 (인)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	예천군수(총무과장)
주 소	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-1번지
점용면적	4,812㎡
점용목적	토지의 점용
사업개요	예천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
점용기간	2026년 9월 29일 ~ 2026년 9월 30일

농업기반정비사업(개간) 준공 승인 고시

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영 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간사업 준공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예 천 군



- ①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② 사업효과 :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.

승 인 조 서

사업명	위 치				승인 면적 (㎡)	사업기간 (시행계획 승인)	총소요 사업비 (천원)	사업시행자
	시군	읍면	리동	지번				
농업기반 정비사업 (개간)	예천	호명	내신	59-2	4,900	2021.01.19.~ 2026.07.30	46,000	이 현 O

예천 군계획시설(주차장)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1. 경상북도 고시 제2012-230호(2012.7.30.)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(1단계) 실시계획 승인된 군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열람공고 합니다.
2. 관계 서류는 예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,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7일
예 천 군 수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1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군계획시설(주차장)사업
- 2) 명 칭 :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사업

다. 사업의 면적

- 1) 사업면적 : 3,248.5㎡(주차장 부지 면적 전체)

2) 건축개요

- 주차타워 : 건축면적 2,209㎡, 건축연면적 9,143.43㎡(1개동, 지하1층~지상4층)
- 건폐율 / 용적률 : 68% / 270.32%(지상층 연면적 8,781.27㎡)

- 최고높이 : 16.68m

- 주차대수 : 310대

라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성 명 : 예천군수(건축과)

2) 주 소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26. 12. 31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
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

연번	주 소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 외의 권리명세			비고
					성 명	주 소	성명	주 소	권리 명세	
1	호명읍 산합리 1411	차	3,248.5	3,248.5	예천군					

사. 열람기간 : 2026. 9. 17. ~ 2026. 10. 1. (14일간)

아. 열람장소 : 예천군청 도시과(예천읍 충효로 111, 4층)

자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(☎054-650-6346) 및
건축과(☎054-650-697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예천 군계획시설(유수지)사업 공사완료 공고

지보면 상월리, 만화리 일원 군계획시설(유수지)사업(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위치 : 지보면 상월리 632번지, 만화리 950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의 종류 : 군계획시설(유수지) 사업
- 사업의 명칭 : 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3. 사업의 규모

- 사업면적(군계획시설) : 상월유수지 8,264.6㎡, 만화유수지 4,903.1㎡
- 사 업 량
 - 상월유수지[배수펌프장 D800mm(80㎥/min) 3대, 유수지 V=16,000㎥]
 - 만화유수지[배수펌프장 D600mm(40㎥/min) 3대, 유수지 V=11,200㎥]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예천군수(안전재난과)
- 주 소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

5. 사업시행기간 : 2025. 8. 28. ~ 2026. 7. 30.

예천군 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

1. 조례명 : 예천군 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일
부개정 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임을 명시하고, 협의체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며 개인정보 보호 조문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을 기재하여 위임 조례임을 명시(안 제1조, 제11조)

- 제1조(목적) 규정에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위임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것임을 명시
- 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 조항인 법 제20조제1항을 명시

나.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대상 확대(안 제12조제4항)

- ‘사회연대경제조직,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자’ 신설

다. 개인정보 등의 보호 조문 신설(안 제16조)

- 법 제27조(비밀의 유지)를 적용, 통합돌봄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보호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조문 신설

4. 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(수)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고: 주민행복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주민행복과
- 전화 : 054-650-8724
- 팩스 : 054-650-6360
- 전자우편 : yello793@korea.kr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(전화: 054-650-872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노쇠”를 “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통합지원 사업”을 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, 주민자치단체에 소속된 자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개인정보 등의 보호)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노쇠</u> 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<u>노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군수는 <u>통합지원 사업</u> 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	제11조(통합지원협의체) ① ----- -- <u>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	제12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
① ~ ③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<u>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, 주민자치단체에</u>

4. (생 략)

⑤ · ⑥ (생 략)

<신 설>

소속된 자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개인정보 등의 보호) 통합

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

였던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및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8조

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직무

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

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

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

된다.